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 개인용)

포상 후보자

성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교육부장관 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일반인만 해당)
- 정부포상 또는 교육부장관표창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인 포상건에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

2. 공적심사 등 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성명

(서명)

## <장관표창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교육부에서는 **장관표창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재교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록부 : 영구</li> <li>·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li> <li>·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li> <li>·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li> </ul>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외국인등록번호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li> <li>·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li> <li>·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li> </ul>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제2호,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장관표창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주민등록번호	「상훈법 시행령」 제33조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교육부 귀중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기관용)

□ 포상 후보기관

기관명	
주소	

위 기관은 교육부장관 표창 후보기관으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기관은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장관표창이 수여된 경우 「교육부 장관표창 업무지침」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정부포상 또는 교육부장관표창 대상자 선정을 진행 중인 포상건에 중복으로 지원한 경우

2. 공적심사 등 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수여 여부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6. . .

기관명

(직인)